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. 6. 18 선고 2020가단101049 판결 [임차권확인의 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곽용석

피고B

변론 종결 2020. 6. 4.

판결 선고 2020. 6. 18.

주 문

1.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2019. 10. 17.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기간 10년, 임차보증금 5,000,000원, 차임 월 500,000원으로 정한 임차권이 있음을 확인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및 '변경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
2. 자백간주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최누림

별지